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7981

발의연월일: 2022. 10. 28.

발 의 자:윤한홍ㆍ권성동ㆍ김승수

김희곤 · 서범수 · 서일준

엄태영 · 윤창현 · 한무경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공유·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 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5조제2항 전단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위원회(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정책 등과 관련되어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회의"를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청년인재 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제5장(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 제25조(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의 운영을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청년지원센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 중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갖추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

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민간단체에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 제28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정부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종전의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 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종전의 제28조)제3호 중 "제25조에"를 "제29조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청년단체"란 청년발전 또는
	<u>청년지원을 주된 목적으로</u>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
	<u>한다.</u>
<u> <신 설></u>	6. "청년시설"이란 청년발전 또
	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제공
	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청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	
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u><단서 신설></u>	<u>다만, 제15조제2항 및 제3</u>
	항에 따라 청년을 위원회의 위
	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
	당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제15조(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① (생 략) 참여 확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u>청년정책을 주로</u>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경우 <u>위원회의</u>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u>제1항 및 제2항</u> <u>에</u> 따른 청년 참여 현황을 국 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②
<u>위원회(개별 사</u>
건을 다루거나 외교·안보 <u>정</u>
책 등과 관련되어 청년을 의무
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아니한 위원회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는 제외
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
야 하는 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
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갖춘 청년을 위촉하는 것이 곤
<u>란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u>
른 청년인재의 자격을 갖춘 청
년을 위촉할 수 있다.
<u>4</u>
제1항부터 제3항
<u>까지의 규정에</u>
⑤제4항에

위원회의 청년 참여 현황을 공 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장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제25조(청년지원기관 및 청년시
설의 설치·운영 등) ① 지방
자치단체는 청년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
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
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의 운영을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6조(청년지원센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 년시설 중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을 갖춘 청년지원기관 또는 청 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 정할 수 있다.
- 1.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
- 2. 지역 청년단체, 청년시설 등 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 3.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 지원과 관련한 조사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 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 5.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센터의 사업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 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를 중앙청년지원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역센터 또는 중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

 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지역 센터 또는 중앙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가 수행하는 청년발전 및 청년

<u><신</u>설>

<신 설>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 등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민간단체에 재정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정부는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범위에서 이를 보유·이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

제5장 보칙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 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 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포상) (생 략)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 문기관 · 단체를 전담 운영기관 으로 지정하여 통합정보시스템 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과 전담 운영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 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 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 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포상) (현행 제26조와 같

제27조(국회 보고) (생 략)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 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 2. (생략)
- 3. <u>제25조에</u> 따라 위탁받은 업 무에 종사하는 청년정책 관 련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

음)
<u>제31조</u> (국회 보고) (현행 제27조
와 같음)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9조에</u>